#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3	3		•
발	의	자	김원섭	의원	외	16명

##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원섭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23. . .

발 의 자: 김원섭·강승수·김낙관·김민성

김영태·김재우·김정도·김춘남 박세채·소진혁·신용하·양진오

이명희·이상호·이정희·정지원

추은희 의원(17명)

#### 1. 제안이유

3대 가족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다. 병역명문가 지원, 예우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라. 협조 요청 및 준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 3. 조례안: 붙임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 2)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 제22조 나. 부서검토: 안전재난과 외 12개 부서 의견제출(붙임)

###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 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병역명문가 지원)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병역명문가 예우 등)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 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 · 격려
  - 3.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요금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록된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협조 요청)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병역명문

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 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②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로 되어 있고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50퍼센트 감면
- ③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5.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사람)
- ④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1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 상자(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사람)
- ⑤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⑥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⑦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⑧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⑨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제3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8.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사람)
- ⑩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①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①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③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④ 「구미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자.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사람)
- ⑤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별표 2]

# 복지회관 사용료, 이용료 및 수강료 감면 요율(제7조 관련)

### ○ 이용료 감면 요율

구 분	대 상	감면 요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감경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구성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 한함)	
○ 이용료	. 감면 요율은 체육시설 중 헬스장에만 적용한다.	

[별표 2]

# 기획공연 등 관람료 감면대상 및 비율(제11조의2 관련)

대 상	비 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30%
「구미시 인구정책지원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 한함)	40%
경상북도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30%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	30 %
예술인패스 카드 소지자(본인에 한함)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10%
20명 이상이 단체로 관람권을 구입한 경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 이내

[별표 1]

# <u>입장료</u>(제6조 관련)

	입	장료	
구분	개인	<b>단체</b> (20명 이상)	비고
일 반 (구미시민) 19세 이상 64세 이하	1,000 (500)	700 (400)	
· 청소년 : 14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군인 (구미시민) - 청소년 : 14세 이상 18세 이하 또는 호·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 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 하인 청소년 · 군 인 : 하사이하의 군인(전경 등)	500 (300)	400 (200)	
1) 13세 이하 영유아 및 어린이, 65세 이상인 사람 2)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하는 사람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14)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15)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16)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 한함) 17) 자료를 기증하거나 기탁하는 등 역사자료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	무료	무료	관련 증명 지참

#### [별표 2]

###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이용료 감면율(제9조 관련)

구분	감면율(%)	비고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단,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00	
2.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생계·주거급여대상자, 한부모가족	50	전통가옥체험관에
3. 구미시민 다자녀 가정(1가정 1실에 한함)	50	한함
4.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50	
5. 구미시민	20	
6.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	

#### ※ 비 고

- 이용료 감면은 중복적용 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할인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
- 이용료 감면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하며 장애인의 장애정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등록된 사람
-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생계·주거급여 대상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 조에 따른 생계·주거급여 대상자를 말한다.
-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 구미시 다자녀 가정이란 주민등록상 주소가 구미시로 되어 있고,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
- 구미시민 다자녀 가정의 감면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발급 6개월 미만)를 제시하여야 한다.
- 구미시민 감면인 경우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를 말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별표 4] <개정 2020.12.30., 2021.6.2.>

### 사용료 감면 요율(제10조의3 관련)

구분	대 상	감면요율	비고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행 사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대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기 <del>족</del> 을 위한 행사	80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광역자치단체 이상의 협회장기 대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 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유공자와 그 배우자 2. 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3. 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 보조자 1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의상자(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 의상자의 활동 보조자 1명 포함) 2. 의사자유족 중 선순위자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개 인	「국군포로송환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등록포로 2.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0분의 50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활동보조자 1명 포함)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로 되어 있고,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수영장 월 회원 중 만 10세부터 만 55세까지의 여성	100분의 10	

- ※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구미시 다자녀 가정의 감면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발급 3개월 미만), 한부모가족 감면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발급 3개월 미만),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의 감면인 경우 병역명문가증과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 [별표 2]

#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기준과 비율(제10조제5항 관련)

구 분	감 면 대 상	감면비율	비고
<ol> <li>수강료</li> <li>가. 취미교양강좌</li> <li>나. 단기강좌 등</li> </ol>	<ul> <li>「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li> <li>「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li> <li>「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li> <li>「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li> </ul>		
<ul><li>2. 시설사용료</li><li>가. 인터넷정보망</li><li>나. 회의장 이용</li><li>및 다목적실</li></ul>	따른 참전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세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      결혼이민자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구미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 한함)      읍·면·동장 및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 우대자	50 퍼센트	

### [별표 2] <개정 2023. 5. 31.>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제4조의2 관련)

감면범위	감면대상	비고
1. 주차요금의 전액 감면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국가유 공상이자(상이 1급부터 7급까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또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유공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 동차	
	<ul> <li>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행하는 관용차</li> <li>「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경도장애 이상의 환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li> <li>「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대한 민국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li> <li>「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유족 또는 가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이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li> <li>국세・지방세 성실납세자로 포상을 납세자 차량이 성실납세자증 표시(스티커)부착 자동차(1년간 면제)</li> <li>「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른예우대상 기업 및 근로자 차량으로 무상사용증 제시 자동차(발급일로 부터 3년)</li> <li>「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른예우대상자 차량으로 무상사용증 제시 자동차(발급일로 부터 3년)</li> <li>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2조의2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부모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li> <li>1년이상 다른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구미시로 전입하는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1년간 면제)(최초 1회)</li> <li>구미시 장학재단고액기탁자(개인) 차량으로 무상사용증 제시 자동차 (1년간 면제)</li> </ul>	관련 증명서 제시
2. 주차요금의 50/100 감면	<ul> <li>○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임산부 증명자료 제시: 산모수첩 및 신분증 등)</li> <li>○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li> <li>○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 감면)</li> <li>○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저공해 자동차 표지가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li> <li>○ 「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9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 구미시 우수 자원 봉사자 카드를 소지하고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li> <li>○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가 운전하는 자동차</li> </ul>	관련 증명서 제시
3. 1회 2시간 무료, 2시간 후 주차 요금의 50/10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관련 증명서 제시

### ■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7] <개정 2022.11.9.>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요율(제10조 관련)

구 분	대 상	감면 요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면 제	구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및 취약종목 선수 훈련	100분의 100
	국가 또는 전국·도 단위 체육행사에 출전하는 시 대표선수 훈련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감 경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가족을 위한 행사	100분의 8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 가정을 위한 행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위한 행사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위한 행사	
	구미시와의 협약에 따른 행사	
	공공스포츠클럽 지정 종목 및 지정스포츠클럽	
감 경	스포츠클럽법 제6조(스포츠클럽의 등록)에 의한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	100분의 50
日 石 石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 한함)	100년의 00

 <sup>○</sup> 감면 요율은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에만 적용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는 부속시설사용료를 포함한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 요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4]

### 구미에코랜드 시설이용료, 체험활동비 감면(제8조 관련)

	구 분	감 면 율	비고
	- 구미시민	50%	
	- 구미시민 다자녀 가정	60%	
	- 구미시민 기초생활수급자	60%	
생태탐방	- 장애인	60%	
모노레일	- 국가보훈대상자	60%	
이 용 료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60%	
	- 홍보행사 등의 수상자(당첨자)	100%	※무료쿠폰지급 - 1회무료/3회수상
	- 구미시민	50%	
	- 구미시민 다자녀 가정	100%	
체험활동비	- 구미시민 기초생활수급자	100%	
(수강료)	- 장애인	100%	
	- 국가보훈대상자	100%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100%	

#### ※ 비고

- 사용료 감면은 중복적용 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할인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
- 사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구미시민 감면인 경우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 구미시민 다자녀 가정 감면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발급 6개월 미만)를 제시하여야 한다.
- 구미시민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인 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제26조에 따른 수급자 중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
- 구미시 다자녀 가정이란 주민등록상 주소가 구미시로 되어 있고 만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
-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하며 장애인 등급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을 따른다.
-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를 말한다.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를 말한다.
- 수강료의 면제는 수강료 감면 대상자가 동일 기간에 개설되는 과목 중 원하는
   하나의 수강 과목에 한정한다.

#### ■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2]

### 구미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율(제7조 관련)

대상기간	성수기	비스	<b>ト</b> 기	น] ¬
감면대상	'8'干/  	주중	주말	비고
1 7 11 11 11	200	0.00	200	카라반, 일반·오토 캠핑장,
1. 구미시민 	20%	20%	20%	평상의 사용료에 한함
2. 구미시민 다자녀 가정	_	50%		
(1가정 1실에 한함)		30%		
3. 장애인	_	50%	20%	일반 • 오토캠핑장, 평상의
4. 국가보훈대상자	_	50%	2070	사용료에 한함
5.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_	50%		
6. 기타	_	50%		

#### ※ 비 고

- 가. 사용료 감면은 중복적용 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할인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
- 나. 사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다. 구미시민 감면인 경우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 라. 구미시민 다자녀 가정의 감면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발급 6개월 미만)를 제시하여야 한다.
- 마. 구미시 다자녀 가정이란 주민등록상 주소가 구미시로 되어 있고,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
- 바.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 사.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3)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 · 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아. 기타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생계 · 주거급여 대상자
-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3)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 한함)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생략)
  - 2. 주민의 복지증진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나~차. (생략)

3~7. (생략)

-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4대째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마친 경우 포함)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 2. (생략)

3.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4. (생략)

- 제22조(병역명문가 예우 및 우대)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정책 관련 정책 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1.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의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
  - 2.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 등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3. 병역명문가 문패 제작 배포
  - 4. 그 밖에 병역명문가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검 토 의 견 서

□ 부서명 : 안전재난과

조 례 명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검토 사항
  - ㅇ 근거 법령
    - 「병역법」
    -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 □ 주요 사항
  - 목적, 정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4조)
  - 병역명문가 지원. 예우. 우대(안 제5조~제7조)
  - 협조 요청,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8조~제9조)
- □ 검토 결과
  -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하는 사업으로 조례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 검토사항
  - ㅇ 기대효과 :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
  - ㅇ 소요예산 : 없음
  - 문 제 점 : 없음

□ 부서명 : 노동복	-지과
조 례 명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인
	」 제13조, 제28조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 제22조
이용시 「구미	l관(근로자종합복지회관 및 근로자문화센터)를 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자 사용료 50% 감면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50% 감면 적용 가능
○ 기대효과 : 3r	성에 따른 향후 검토사항 내 가족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가 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ㅇ 소요예산 : 없음

o 문 제 점 : 없음

□ 부서명 : 문화예술과

조 례 명

구미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검토 사항

- ㅇ 근거 법령
  - 「구미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 센터 이용자에 대한 면제 및 50퍼센트 범위 내 감경에 대해 규정

### □ 주요 사항

-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2항을 근거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사용료 및 입장료, 주차요금 등에 대한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주고자 함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해 구미영상미디어센터의 사용료, 입장료 등 50퍼센트 범위 내 감경 가능 여부

### □ 검토 결과

-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등 관련 근거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
- □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 검토사항
  - 이 기대효과 : 병역명문가 및 그 가족에 대한 시설 사용료 감경의 제도적
    - 기반 마련으로 센터 이용객 증가 및 활성화 기여
  - ㅇ 소요예산 : 해당없음
  - 문 제 점 : 해당없음

□ 부서명 : 관광인프라과				
조 례 명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 사항				
■ 구미시 병역	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 별표2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우대상자에게 신라불교초전지의 시설물 사용료 함.			
	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 별표2 우대상자 전통가옥체험관 이용료 50% 감면하고자 함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 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ㅇ 기대효과 : 병	에 따른 향후 검토사항 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 사회 분위기 조성 음			

□ 부서명: 체육시설관리과

조 례 명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외 3개 일부개정조례안

### □ 검토 사항

- ㅇ 근거 법령
  - 병역법 제82조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 및 제20조

### □ 주요 사항

- ㅇ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조례
  - 별지 4 사용료 감면 요율 50% 감면
- ㅇ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별지 7 사용료 감면 요율 80% 감면
- ㅇ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1조제1항제2호 파목 신설 감면 요율 60% 감면
- ㅇ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8조제2항제15호 신설 감면 요율 50% 감면

### □ 검토 결과

병역명문가들이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문화 확산기여와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이용료 50% 감면으로 제시하신 안이 타당함으로 사료되오나, 주요사항의 운영 조례들에 대한 요율이 모두 상의하오니, 별지3에 병역명문가 대상으로는 모두 50% 감면으로 적용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 검토사항

 기대효과: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갖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군복무에 대한 긍정 적인 인식을 고취함에 기여

ㅇ 소요예산 : 비예산

○ 문 제 점 : 세외수입감소

□ 부서명 : 총무과

조 례 명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검토 사항

- ㅇ 근거 법령
  - 지방자치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 □ 주요 사항

○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2]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기준과 비율(제10조제5항과 관련) <u>감면대상</u>에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추가(감면비율 100%)

### □ 검토 결과

- 경기도 의정부시, 남양주시, 충남 서산시, 당진시 등 타지자체의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대상자에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가 포함되어 있음 ※ 감면비율은 지자체별 상이
-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 관련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부서명 : 노인장애인과

조 례 명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검토 사항

- ㅇ 근거 법령
  -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8호

### □ 주요 사항

- ㅇ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에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내용을 추가하여 노인복지시설 사용료, 이용료 등 감면 혜택을 주고자 함.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게 노인복지시설 사용료, 이용료, 수수료 등 감면 혜택 적용 가능 여부

### □ 검토 결과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1항에 따라 시가 설치·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로 경로당이 있으나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
 으로 요금을 받고 있지 않기에 조례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사료됨.

### □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 검토사항

○ 기대효과 : 해당없음

○ 소요예산 : 해당없음

○ 문 제 점 : 해당없음

□ 부서명 : 하천과				
조 례 명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 사항				
ㅇ 근거 법령				
	」 제13조, 제28조			
┃	·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 제22조			
□ <b>주요 사항</b> ○ 구미캠핑장 시	설사용료 감면율 변경(안 별표2)			
│ │				
	대상 변경에 대한 조례 개정이 타당함.			
│ │	성에 따른 향후 검토사항			
ㅇ 기대효과 : 병	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게 이용료 감면 제공.			
ㅇ 소요예산 : 없	<u>о</u> п			
ㅇ 문 제 점 : 없	<u>о</u> П			
I				

□ 부서명 : 하침	<u> </u> 과
조 례 명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ul><li>□ 검토 사항</li><li>○ 근거 법령</li></ul>	
	치법」 제13조, 제28조 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 제22조
□ 주요 사항 ○ 입장료 감독	면대상 변경(안 별표4)
	면(구미시민)은 중복적용 되지 않으므로 추가적 감면혜택 가 예우대상자)이 없음
<ul><li>□ 조례 제(기</li><li>○ 기대효과 :</li><li>○ 소요예산 :</li><li>○ 문 제 점 :</li></ul>	없음

□ 부서명: 교통정책과

조 례 명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조례 개정안

### □ 검토 사항

- ㅇ 근거 법령
  - 주차장법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주차요금감면)

### □ 주요 사항

•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

### □ 검토 결과

- 3대 가족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다만, 전액 감면에 대하여는 여러 부작용으로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전액보다는 50% 감면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 전액 감면 시 출차에 제한이 없어 공영주차장 혼잡을 야기하며,
   정기권 이용자 및 기존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할 여지가 있음
- 병역명문가는 현재 약 50가문으로 예우대상자 가족까지 포함 시약 300명 정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점점 증가추세이므로, 전액 감면 시 주차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타 지자체 사례 검토 결과 대부분 50% 감면을 적용 중

### □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 검토사항

- 기대효과: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사회분위기 조성
- 소요예산 : 없음
- ㅇ 문 제 점 : 시설관리공단 적자 악화

□ 부서명 : 산림과				
조 례 명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ul><li>□ 검토 사항</li><li>○ 근거 법령</li><li>• 「산림문화·휴양</li></ul>	냥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7			
근거로 병역명 기관 또는 시 또는 면제 혀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2항을 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설의 사용료 및 입장료, 주차요금 등에 대한 감면  택을 주고자 함 휴양림 주차장 사용료 면제 여부			
	·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등 관련 근거  촉사항이 없음			
	형에 따른 향후 검토사항 역명문가 및 그 가족에 대한 시설 사용료 감경의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휴양림 이용객 증가 및 활성화 기여

ㅇ 소요예산 : 해당없음

ㅇ 문 제 점 : 해당없음

□ 부서명 : 산림과

조 례 명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검토 사항

- ㅇ 근거 법령
  -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4
  - 구미에코랜드 시설이용료(60%), 체험활동비(100%) 감면

### □ 주요 사항

-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2항을 근거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사용료 및 입장료, 주차요금 등에 대한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주고자 함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해 구미에코랜드의 시설 이용료, 체험활동비 등 감면 가능 여부

### □ 검토 결과

- ㅇ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4 문구 수정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구미시민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타지자체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혼돈 방지)

### □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 검토사항

- ㅇ 기대효과 : 병역명문가 및 그 가족에 대한 시설 이용료 등 감면의
  -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구미에코랜드 이용객 증가 및 활성화 기여
- 소요예산 : 해당없음
- 문 제 점 : 해당없음

□ 부서명 :	: 농촌지원과
---------	---------

조 례 명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검토 사항

- ㅇ 근거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제8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3

### □ 주요 사항

ㅇ 농업기계 임대료 및 배달료 감면에 관한 기준 개정(안 제11조)

### □ 검토 결과

병역명문가를 위한 임대료 감액을 조례로 재정함으로서 농업 경영비 절감에 기여

### □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 검토사항

- ㅇ 기대효과
  -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경영 개선
  - 병역명문가에게 임대료를 감액해 줌으로써 농가 경영비 절감
- ㅇ 소요예산 : 없음
- ㅇ 문 제 점
  - 감면 조치에 따른 세입 감소
  - 병역명문가 증가에 따른 농업기계 구입 확대 필요

□ 부서명 : 문화예술회관							
조	례 명	구미시 등	L화예술회 <sup>3</sup>	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검	토 사항						
0	근거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	포창 운영	규정」	제2조,	제22조	
 	요 사항						
0	기획공연 및 2	선시 추진 /	시 「구미시	] 병역대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관	람료 40	)% 할역	રો	
   □ ₹	넘토 결과						
0	「구미시 병역	명문가 예	우 및 지원	에 관현	한 조례	]」에 따른	- 예우
	대상자 기획공	·연 및 전시	] 관람료 4	10% 할	인 적용	용 가능	
 	트례 제(개)건	성에 따른	향후 검	토사힝	}		
0	기대효과 : 병	역명문가가	· 존경받고	보람과	- 긍지-	를 가질 수	- 있는
	사	회 분위기	조성				
0	소요예산 : 없	<del>О</del>					
0	문 제 점 : 없	<u>0</u>					
1							

□ 부서명 : 문화예술회관 강동분관팀				
조 례 명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 제28조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 제22조			
	회관 이용 시「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따른 예우대상자 이용료 50% 감면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문화복지회관 이용료 50% 감면 적용 가능			
<ul><li>기대효과 : 병역</li></ul>				

□ 부서명 : 박정희	대통령역사자료관
조 례 명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 사항	
○ 근거 법령	
■「지방자치법_	」 제13조, 제28조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 제22조
□ 주요 사항	
ㅇ 박정희대통령	형 역사자료관 입장료 면제
□ 검토 결과	
ㅇ 대대로 병역	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안 개정이 필요함.
※ 현재 입장	료 무료 운영 중
│ │	성에 따른 향후 검토사항
ㅇ 기대효과 : 병	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	회 분위기를 조성
ㅇ 소요예산 : 해	당없음
ㅇ 문 제 점 : 해	당없음